##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533

발의연월일: 2020. 1. 21.

발 의 자: 강대식 · 백종헌 · 유의동

윤재옥 • 허은아 • 박완수

류성걸 · 김용판 · 홍석준

조수진 · 정찬민 · 김희국

신원식 · 양금희 의원

(14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군인 병사들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경우 이 사실을 해당 병사의 소속부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이러한 근거규정이 없어 음주·성범죄등 범죄 행위를 하여도 이를 소속기관 및 병무청이 통보받지 못해 적기에 범죄사실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는 실정임.

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사실이 있을 시 적기에 징계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이 이를 소속기 관 및 병무청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함(안 제32조의 2). 법률 제 호

##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의2(수사기관의 수사 개시·종료 통보) 수사기관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나 금품비위,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때에는 10일 이내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 및 병무청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회복무요원의 수사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) 제32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사기관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조사나 수 사를 시작한 때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32조의2(수사기관의 수사 개시·
	종료 통보) 수사기관은 사회복
	무요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
	된 사건이나 금품비위, 성범죄
	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
	행위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
	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
	0일 이내에 사회복무요원을 배
	정받은 기관의 장 및 병무청장
	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
	하여야 한다.